

보험증 사용에 관한 주의점

보험증에는 사용기한이 있습니다. 사용기한이 지난 후에는 반드시 근무처에 반납하여 주십시오.



보험증의 사용기한에 관하여

보험증은 「퇴직일」 까지 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퇴직을 하게 되면, 반드시 가족의 보험분도 포함해서 근무처에 반납해야 합니다.

퇴직일 당일에 근무처에 반납하여 주십시오.

퇴직 후에 보험증을 사용하게 된 경우

전국건강보험협회로부터 귀하에게 의료비 반환을 요구하게 될 것이며, 반환금액은 수백만엔 이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**보험증의 사용기한을 잘 확인한 다음에 보험증은 반드시 반납해 주십시오.**

보험증 사용기한의 확인과 반납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.

보험증의 사용에 관하여

보험의료기관등에서 진료를 받으려고 하실 때에 반드시 보험증을 창구에서 제출해 주십시오. 보험증을 잊어버린 경우에는 의료비100%를 지불하여야 합니다.

업무상의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.

교통 사고등에 의해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실 때에는 반드시「제3자의 행위에 의한 상병 신고서」를 관할지역의 전국건강보험협회지부에 제출하여 주십시오.

보험증대여와 같이 부정으로 보험증을 사용한 경우 형법에 의거 사기죄로 징역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보험증을 분실했을 때에는「건강 보험 피보험자증 재교부 신청서」를 즉시 사업주를 통해 제출하고 재교부를 받으십시오. 또한 훼손된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훼손된 보험증을 첨부해 주십시오.

퇴직시에는 반드시 근무처에 반납하여 주십시오. 퇴직 후 보험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